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안전국 1개 정책관등, 1개 과 및 1개 센터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 중 1명(8등급 1명)은 외교부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0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경감 4명)은 증원하며,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인공지능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국민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영사조력 및 영사서비스 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을 증원하며,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5명(경정 또는 경감 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및 출입국 분야 주재관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23명(3등급 또는 4등급 23

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과 공관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9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외 위난상황 등 사건·사고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12. 영사안전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제56조제2항 중 “66명”을 “6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5급 1명)은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부”를 “1명(5급 1명)은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부, 3명(경감 3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5항 중 “2026년 2월 28일”을 각각 “2029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주레바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란 다음에 주시리아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레바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레바논공화국 베이루트	레바논공화국	레바논공화국
--------------------	----------------	--------	--------

주시리아아랍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레바논공화국 베이루트	시리아아랍공화국	시리아아랍공화국
----------------------	----------------	----------	----------

별표 2 계란, 경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란 및 출입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계	353	82	271	33	17	191	30
---	-----	----	-----	----	----	-----	----

경찰	77	77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16		16	2		14	
--------------	----	--	----	---	--	----	--

출입국	32		32			13	19
-----	----	--	----	--	--	----	----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72명”을 “77명”으로, “49명”을 “54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35”를 “962”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28”로 하며, 4급 이하 “224”를 “225”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0”을 “72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43”을 “44”로, 8등급 이하 “643”을 “664”로 하고,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경감 이하 4”를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1,506”을 “1,510”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506”을 “1,510”으로 하며, 8등급 이하 “1,105”를 “1,109”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 중 “2026년 2월 28일”을 “2029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6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2조제1항 관련)

1. 외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가. 개발협력국 1개 과	5명
나. 기후환경과학외교국 1개 과	0명
다. 개발협력국 1개 정책관등	0명
라. 영사안전국 1개 정책관등	1명
마. 영사안전국 1개 과	11명
바. 영사안전국 1개 센터	4명

2. 외교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대한민국재외공관)	7명

[별표 9]

대한민국재외공관 한시정원표(제63조 관련)

제6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9년 2월 28일)

총계	1
외무공무원 계	1
3등급 또는 4등급 이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u>둔다</u> .	제24조의2(영사안전국) ① ----- -----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u>둔다</u>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u>국장 및 정책관등 1명</u>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국외사건 · 사고, 국외 위난 상황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u>	10. <u>국외 위난상황 등 사건 · 사고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u>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u>영사콜센터의 운영</u>	12. <u>영사안전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u>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u>66명</u> 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	② ----- ----- ----- ----- ----- ----- <u>68명</u> ----- ----- -----

다.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5급 1명)은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③ (생략)

④ 삭제

⑤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9

--.

③ -----

----- 1명(5급 1명)은 통일부, 1명(7급 1명)은 법무부, 3명(경감 3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
-----.
-----.

제63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2029년 2월 28일 -----
-----.
-----.

③ (현행과 같음)

⑤ -----

-- 2029년 2월 28일 -----

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⑥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 --. <삭 제>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35</u>	<u>962</u>	+27
·	·	·	
·	·	·	
일반직 계	<u>227</u>	<u>228</u>	+1
4급 이하	<u>224</u>	<u>225</u>	+1
·	·	·	
외무공무원 계	<u>700</u>	<u>722</u>	+22
·	·	·	
고위공무원단	<u>43</u>	<u>44</u>	+1
·	·	·	
·	·	·	
8등급 이하	<u>643</u>	<u>664</u>	+21
<u>경찰공무원 계</u>	<u><신 설></u>	<u>4</u>	+4
<u>경감 이하</u>	<u><신 설></u>	<u>4</u>	+4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506</u>	<u>1,510</u>	+4
외무공무원 계	<u>1,506</u>	<u>1,510</u>	+4
·	·	·	
·	·	·	
8등급 이하	<u>1,105</u>	<u>1,109</u>	+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3